개 정 일	2024.10.29
기안부서	신탁부
결정권자	WM팀장

# 신탁보수 처리지침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 신탁보수 처리지침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신탁법 제4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 신탁업무방법서 제18조 및 신탁내부통제기준운영세칙 제24조에 의거하여 회사가 영위하는 신탁업무와 관련한 신탁 보수의 책정, 수취시기, 수취방 법, 수수료 지급 등의 처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신탁보수"란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 및수익자(이하 "고객"이라 함)에게 제공하는 신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보수의 금액 또는산정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신탁사무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적당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 ② "권유자" 란 임직원 및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시험에 합격 후 별도의 신탁등록교육을 이수하고 삼성생명과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을 체 결한 투자권유대행인(컨설턴트)으로서 고객에게 최초로 신탁계약체결을 권유한 자를 말한다.
- ③ "수수료"란 삼성생명(판매회사)이 권유자에게 투자권유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제3조 (지침의 제·개정)

이 지침을 제·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WM팀장의 결정으로 시행한다.

#### 제4조 (처리원칙)

- ① 신탁보수는 신탁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되는 신탁사무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신탁 건별로 책정하여야 한다.
- ② 제공되는 신탁사무의 성질과 내용이 동일할 경우 고객별로 신탁보수를 차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 (신탁보수의 종류)

신탁보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단,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 ① 신탁기본보수(이하 "기본보수"라 한다)는 선취보수와 후취보수로 나뉘며, 선취 또는 후취 단독형, 선후취 복합형으로 책정할 수 있다.
  - 1. "선취보수"란 신탁계약 당일에 1회한 수취하는 보수로써, 계약을 위해 사전에 제공된 신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 2. "후취보수"란 신탁계약 사후에 제공되는 신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 를 말하며, 1일 단위로 계산되어 신탁계약에 따라 해지일, 정기일 등에 수취한다.
- ② "신탁성과보수(이하 "수익보수"라 한다)"란 수익보수 계산일 현재 신탁 재산가액이 최초 신탁 원본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수취하는 보수로써 운용 에 대한 추가적인 성과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 ③ "신탁별납보수(이하 "별납보수"라 한다)"란 신탁보수를 고객으로부터 별도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신탁자산에서 차감하여 보수를 처리할 수 없는 계약에 대해서 적용하며, 고객과 협의한 납입일에 보수를 수취한다.
- ④ "신탁관리보수(이하 "관리보수"라 한다)"란 관리형신탁을 계약한 고객에게 수취하는 보수로 체결보수·집행보수·후취보수로 나뉜다.
  - 1. "체결보수"는 관리형신탁상품 계약 당일에 1회한 보수를 수취한다.

- 2. "집행보수"는 관리형신탁상품 계약 유지시 수익자로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제2의 신탁기간에 보수를 수취한다.
- 3. "후취보수"는 제5조 제1항 제2호의 보수를 수취한다.

#### 제6조 (신탁보수의 책정)

신탁보수는 최소 수준의 기본보수를 기준으로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신탁 업무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책정한다.

- ① 후취보수는 운용자산別로 책정되며, 운용자산이 2개 이상일 경우 운용 자산의 최상위 보수율을 적용한다.
- ② 선취보수는 제1항에서 정해진 후취보수의 지급기간(3년) 총합계의 범위 내에서 계약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 ③ 수익보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표(이하 "기준지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기준은 고객과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 1.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수일 것
  - 2. 신탁재산의 성과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수일 것
  - 3. 검증 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 ④ 별납보수는 AUM 구간별 단일보수체계로 차등하여 적용하며, 고객으로부터 별도로 수취한다. 단, 부동산처분신탁은 계약의 특성상 별도의 보수 (성공보수, 사무보수 등)를 책정할 수 있다.
- ⑤ 체결보수와 집행보수는 신탁계약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고객으로부터 별도로 수취한다.

#### 제7조 삭 제 <2019.08.21>

#### 제8조 (신탁보수의 계산)

신탁보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단,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 ① 기본보수(별납포함)

- 선취보수 : 신탁원본 × (기본보수율)%

- 후취보수 : 신탁원본평균잔액 × 연(기본보수율)%

- · 신탁원본평균잔액이라 함은 일별 신탁원본을 신탁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신탁기간(일수) 계산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보수 차감 일로부터 신탁계약으로 정한 기본보수 수령일 또는 요구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 ② 수익보수(별납포함)

- 신탁수익률이 "0"보다 크고 기준지표수익률 보다 큰 경우
  - : 신탁원본 × [신탁수익률 기준지표수익률] × 수익보수율
- 신탁수익률이 "0"보다 크지 않거나 기준지표수익률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수익보수는 "0"원으로 한다.
  - · 신탁원본은 새로운 계약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수익보수 계산일 현재 까지 일부해지금액이 있는 경우 일부해지 금액을 빼고 계산한다
  - · 수익보수 계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탁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영업 전일
    - 2. 고객이 신탁계약 해지(일부해지 포함)를 신청한 날 이후 2영업일이 지난 날

#### ③ 관리보수

구분	보수종류	수취방법
금 전	체결보수	- 신탁금액 × 0.3% (최저보수금액 5百万)
	집행보수	- 신탁금액 × 0.3% (최저보수금액 5百万)
	후취보수	- 신탁금액 × (운용자산別 보수율) %
재 산	체결보수	- AUM 구간별 정액보수
세건	집행보수	(최저보수금액 5百万)
н처그	체결보수	- 없음
보험금 청구권	집행보수 <sup>1)</sup>	- 신탁금액 × 1.0%
	후취보수	- 신탁금액 × 연 0.3%

1) 최초 판매개시일로 부터 6개월 동안 집행보수는 선취 0.5% 수취

#### 제9조 (신탁보수의 수취)

신탁보수는 다음과 같이 수취한다. 단,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 ① 본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기본보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이익 지급일에 신탁재산에서 수령하거나 고객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 ② 본 지침 제8조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수익보수는 신탁계약해지(일부해지 포함)에 따라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또는 신탁기간이 끝나는 등 신탁계 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고객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의 2 (중도해지수수료의 계산)

- ① 신탁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중도해지수 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중도해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중도해지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해지신탁원본 × 중도해지수수료율 ÷ 계약기간 × 계약만기까지 잔존기간
- ③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선취보수를 받은 때에는 중도해지 이후의 기간에 대한 선취 신탁보수는 일할 계산하여 고객에게 반환하고, 후취보수를 받을 때에는 중도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후취 신탁보수를 고객으로부터 받는다.

#### 제10조 (투자권유대행인의 수수료)

① 투자권유대행인의 수수료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별납형	선취보수	후취보수	관리(체결) 보수	관리(집행) 보수	지급기간
40%	70%	40%	70%	50%	3년

- ※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관리(체결)보수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 단, 컨설턴트 본인계좌에서 발생한 거래실적에 대해서는 상기 지급 률의 1/2을 지급한다.
- ② 수수료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다.
  - 1. 선취보수와 관리(체결)보수에 대한 수수료는 계약일 익월에 지급한다.
  - 2. 관리(집행)보수에 대한 수수료는 수익자로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일자의 익월에 지급한다.
  - 3. 후취보수의 수수료는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해지 익월에 지급하고, 1

년 이상 유지되는 계약은 지급기간동안 연단위로 분할지급 한다.

- 4. 별납형보수의 수수료는 납입일 익월에 지급한다.
- ③ 후취보수만 있는 경우에는 후취보수 발생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급기간 동안 지급한다.

#### ④ [효력정지자]

보수교육 미수료에 따른 효력정지 시 효력정지일부터 권유행위가 불가하나, 효력정지 이전 개설된 계좌의 추가납입분에 대한 수수료는 계속하여지급한다.

#### ⑤ [중도위탁계약해지자]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서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 자와 당사 또는 당사 전속/제휴보험 대리점과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은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와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당사의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해지 전일까지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 지급하며 해지 이후의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⑥ [재위탁계약자]

- 1. 투자권유대행인이 위탁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계약 해지 전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을 자동으로 승계하여 신탁계약 체결을 권유한 계좌에서 재위탁계약 체결일이후부터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 2. 투자권유대행인이 위탁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 초과하여 경과된 이후 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신규등록 및 기존 권유계좌의 권유인 변경을 '별지제1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해지 전 권유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변경요청일 이후 납입건에 대한 발생한

- 수수료부터 지급한다.
- 3. 위탁계약 해지일로부터 재위탁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수 수료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의 2 (임직원의 수수료)

- ① 임직원의 수수료는 2008.03.25. 이후 개설된 계좌에 한하여 지급한다.
- ② 임직원의 수수료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별납형	선취보수	후취보수	관리(체결) 보수	관리(집행) 보수	지급기간
30%	30%	- 단, 후취만 있 는 경우 총 보수의 30%	30%	30%	1년

- ※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관리(체결)보수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임직원의 수수료는 매월 15일에 원천징수 후 인별 FB계좌로 지급하며, 해당일이 영업휴무일인 경우 직전일에 지급한다.
- ④ 임직원의 수수료가 1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지급을 유보하고, 누적된 미지급 수수료의 합산금액이 1만원 이상이 되는 시점에 일괄 지급한다. 단,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에는 누적된 미지급 수수료를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의 수수료는 계좌가 개설된 시점으로부터 1년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본인계좌는 예외로 한다.
- ⑥ 임직원의 퇴직 시, 인사운영P로부터 퇴직공람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영 업일 이내에 퇴직하는 날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일까지 누적된 미지급 수 수료를 인별 FB계좌로 지급한다.
- ⑦ WM팀 소속 임직원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포함한 모든 계좌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⑧ 컨설턴트에서 임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자의 과거 권유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1조 (기타 사항)

- ① 기타 신탁보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② 신탁보수 처리와 관련한 관계 법령 등과 본 지침이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상위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지침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지침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지침은 202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지침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지침은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지침은 202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 권유자 변경 신청서

	내 용	비고
고 객 명		
계좌번호		
개설일자		
변경전		
권유자명(사번)		
변경후		
권유자명(사번)		
변경사유		
소급적용반영일		
소급적용 사유		
고객통화기록		
(통화시간/번호)		